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

※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 20일 수시검사 : 30일
------	------	--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검사 종류	사용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정밀안전검사 []
-------	----------	----------	----------	------------

주차장치	제작사	전화번호
	인증번호	명칭
	종류 및 방식	
	보수사	전화번호

설치장소

기계식주차장의 직전 검사일 또는 변경사항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제19조의2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 제16조의2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전문검사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첨부서류	사용검사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2. 전동기 시험성적서 3. 감속기 시험성적서 4. 제동기 시험성적서 5. 운반기 계량증명서 6. 설치장소 약도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주차장법」 제19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정기검사	설치장소 약도	
	수시검사	1.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 3. 설치장소 약도 ※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정밀안전검사	없음	

작성방법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제작자등이 법인인 경우 제작사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제작사, 인증번호, 명칭란에는 안전도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의 직전검사일 또는 변경사항란에는 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의 경우 직전검사일, 수시검사의 경우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	→	접수 담당부서	→	검토 담당부서	→	승인 담당부서	→	현장검사 담당부서	→	결재 담당부서	→	결과 통보
---------------------------	---	------------	---	------------	---	------------	---	--------------	---	------------	---	-------